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8
----------	-----

제출년월일 : 2019.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읍면 단위의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이 현재까지 관 주도로 진행되어 기존의 직능단체들은 일반 주민들의 대표성 취약하며, 이에 따른 일반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인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읍면 단위의 주민협의 창구 필요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의 주요수행업무 {조례(안) 제5조(기능)}

-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 수탁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나.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관한사항 {조례(안) 제9조(위원의 선정)}

- 성별·연령별·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참여를 고려
 - o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o 해당 읍·면 소재의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 선정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함
-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
- 위촉된 위원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이수
-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해당 방법에 따라 위촉하되,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음.
- 주민자치회 구성, 위원 위촉에 대해 주요 인적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
-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최초의 구성 시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읍·면장이 정함.

다. 주민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4조(주민총회)}

-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
-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
-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사전 투표 진행 가능
-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음.
-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 공개

라. 자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 o 주민자치회는 읍·면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체계획 수립
 - o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
- 자치계획의 내용
 - o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계획,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별 사업계획, 읍·면 주민참여 예산 사업계획,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6조(운영)}

-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
-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2020년 당초예산 반영요청

다.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10. 17. ~ 2019. 11. 6.), 의견 2건 접수(붙임 참고)
- 2) 규제심사 : 비규제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성별·연령별·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1조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하되, 성별·연령
별·사회계층별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하여야 한다.

⑤ 위촉된 위원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
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 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5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읍·면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6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 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회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별도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회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관련조문
 -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1회(307-12, 민간인위탁교육비)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1회(301-09 행사실비보상금)
- 주민자치회 운영 4회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나. 추계 결과 : 54,200천원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307-12)
 - 15,600천원 × 1회 = 15,600천원
-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301-09)
 - 28,600천원 × 1회 = 28,600천원
- 주민자치회 운영 (307-02)
 - (회의운영) 1,600천원 × 4회+ (수용비) 3,600천원 = 1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군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총무담당관 김명기
연락처	(033) 330 - 2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54,200	58,600	58,600	58,600	58,600	288,600
	역량강화 교육	15,600	15,600	15,600	15,600	15,600	78,000
	역량강화 워크숍	28,600	28,600	28,600	28,600	28,600	143,000
	주민자치회 운영	10,000	14,400	14,400	14,400	14,400	67,600
자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4,200	58,600	58,600	58,600	58,600	288,600
	지방세	54,200	58,600	58,600	58,600	58,600	288,6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3]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2건

평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성 명 : 박정우
- 주 소 :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2길 26-3
- 연 락 처 : 010-5230-5349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각 읍면에 번영회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 기존 번영회와 중복되면, 인원도 점점 줄어드는 현 사항에 단체를 자꾸 만들면, 분열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고를 요청합니다.	

평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성 명 : (사)진부면번영회
- 주 소 :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62
- 연 락 처 : 033-334-1577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번영회 체계를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이양하여 운영하면서 조례에 따라서 정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